

'23년 4분기 (최초)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

2023. 12. 19.

고용노동부장관

1. '23년 4분기(10.1.~12.31.)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'24.1.2.(화) 09:00부터 '24.1.31.(수) 18: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한 경과 시 '23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

2.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('23년 4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)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*(www.ei.go.kr)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제출

* 고용보험 홈페이지→기업서비스→고용창출장려금→고령자 고용지원금

3.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「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 1350)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(팀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참고

- 1)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
- 2)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(서식)
- 3)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

□ 관련 규정

- 「고용보험법」 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(고령자 고용지원금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(지원기준)

□ 사업개요

- (목적)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
- (신청대상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 - * 단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사행·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
- ① (사업적용기간)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'23.9.30.까지 1년 이상일 것
- ② (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)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'23.4분기('23.10.1.~12.31.)의 월 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

<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>

사업적용기간	1년 이상 ~ 2년 미만	2년 이상 ~ 4년 미만	4년 이상
산정기간	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	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	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
산정대상	만 60세 이상자 중 (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) + (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)	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	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

- ③ (지원 대상 근로자)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
 - (지원 제외) 사업주(법인의 대표)의 배우자 및 직계·존비속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*

*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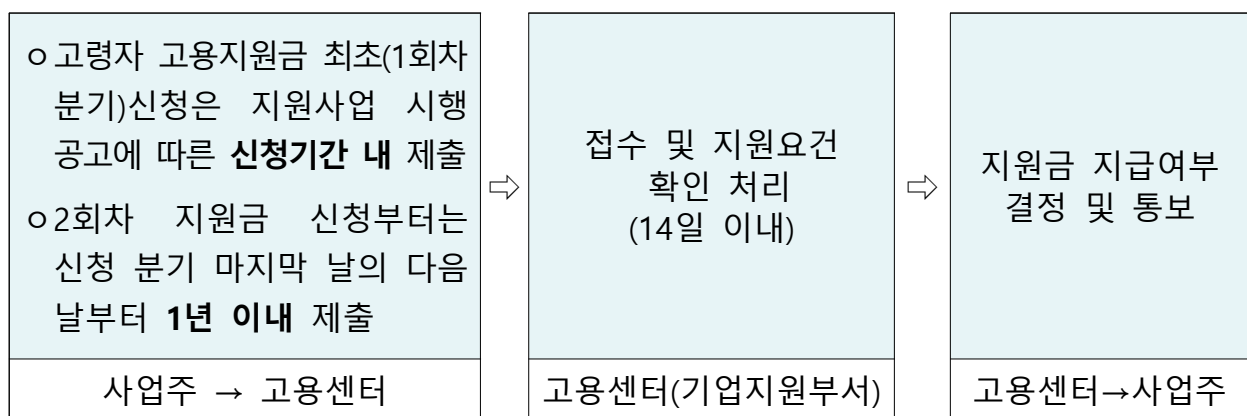
- ④ (지원금액 및 지원기간)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(8분기) 지원
- 지원한도: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%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(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)

□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

- (신청·접수 기간) '24.1.2.(화) 09:00 ~ '24.1.31.(수) 18:00
 - ※ '24.1.31.(수) 우편 소인(우체국 접수 날짜)까지 유효,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
- (신청 방법)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제출(우편 또는 방문)
- (제출 서류)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'23.4분기의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

□ 참고사항

- 지원 절차



- 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☎1350)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(참고3 참조)

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

■ **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**] (개정 2023. 1. 1.)

(년 분기) **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**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1. 사업주 현황(모든 사항 필수 기재)

사업장명		사업장관리번호		대 표 자	
소재지				전화번호	
사업장 형태	우선지원 대상기업[]	중견기업[]	대규모기업[]	담 당 자	

2. 신청 내용

확인사항	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닙니다.	예[] 아니오[]
	㉡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아닙니다.	예[] 아니오[]
	㉢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(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이사)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·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	예[] 아니오[]
	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를 받지 않았습니다. 예[] 아니오[]((받은 경우) 지원금 명칭: _____)	
「고용보험법」 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, 부정수급(반환, 지급제한, 추가징수 등)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

① 사업적용기간 월평균 고령자수 (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)

※사업적용기간에 따라 산정 기간 및 대상 상이, 뒷면 참조

동

구분	월별	피보험자 수	고령자 수(1년 초과)
신청 분기 현황	() 월 말일 기준	명	명
	() 월 말일 기준	명	명
	() 월 말일 기준	명	명
월평균 <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>		② 명	③ 명

④ 증가(지원대상) 고령자 수
(③-①,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, 월평균 피보험자 수^②의 30% 한도)

品

⑤ 신청금액 (=④×30만원)

아니

⑥ 계좌번호

010

(예금주:

)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8조의5 및 「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」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을 신청합니다.

이
호
지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※ 첨부서류

1.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

수수료
없음

※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.

접수	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(14일)				
선람	담당		팀장		과장		청장 (지청장)		결재연월일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(뒤쪽)

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(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작성)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입사일	퇴직일(마지막 근무일)	비고
<예>	홍길동	57.04.01	2019.01.15.	2023.02.16.	
1					
2					
3					

작성 방법

1. 지원대상 사업주: 사업적용기간(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 날까지의 사업 기간)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
가. 우선지원대상기업: 상시 근로자수 등이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서 정한 기업

나. 중견기업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

※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mme.or.kr)에서 발급한 “중견기업확인서”로 확인

2.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아래표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대상자(매월 말일 기준 재직자)를 산정기간으로 나눈 값

사업적용기간	1년 이상~2년 미만	2년 이상~4년 미만	4년 이상
산정기간	이전 1년	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	이전 3년
산정대상 (아래 3항의 적용제외자는 제외)	만 60세 이상자 중 (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) + (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)	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	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

※ 향후 매 분기 지원금 신청 시에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원임

(예시)

평균 고령자 수 = $\frac{\text{고령자의 수 합계 ['20년도(1월 말 +...+ 12월 말) + '21년도(1월~12월) + '22년도(1월~12월)] }}{\text{매월 말일 현재 고령자가 있었던 개월 수(3년 내내 고령자가 있었으면 36개월)}}$
(23년 1분기 최초 신청, 사업적용기간 4년 이상)

②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수의 월 평균을 기재

③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만 60세 이상(생년월일 기준)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수(아래의 사람은 제외)의 월 평균을 기재

- 사업주(법인의 대표 포함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거주(F-2)·영주(F-5)·결혼 이민자(F-6)는 포함
-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

④는 ③의 월평균 고령자 수에서 ①의 평균 고령자 수를 뺀 인원수를 기재

※ ②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% 한도,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한도인원은 3명

⑤ 신청금액은 ④ 증가(지원대상) 고령자 수에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(원 이하는 버림)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

➔

접수 및 확인

➔

신청서 처리

➔

지원금 지급여부
결정 및 통지

➔

수령

[신청인]

[지방고용노동관서]

[신청인]

고용센터	주소	연락처	관할지역
서울고용센터	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, 10층(장교동,장교빌딩)	02-2004-7339, 7379	중구 · 종로구 · 동대문구
서초고용센터	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, 5층	02-580-4972~4, 4977~9, 4922, 4940	서초구
서울강남 고용센터	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, 금강타워 10층	02-3468-4680, 4703, 4707~9, 4713~5, 4732, 4774, 4784, 4787, 4845	강남구
서울동부 고용센터	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	02-2142-8404~5, 8410, 8432, 8454, 8481, 8932, 8896	성동구 · 광진구 · 송파구 · 강동구
서울서부 고용센터	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-8, 8층 810호 (도화동, 삼창프라자)	02-2077-6002~5, 6007~8, 6047, 6034, 6025, 6065, 6055, 6012~6014, 3422, 3403, 3496, 3473, 3364	용산구 · 마포구 · 서대문구 · 은평구
서울남부 고용센터	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, 9층	02-2639-2300	영등포구 · 양천구 · 강서구
서울북부 고용센터	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, 2층 (상계동, 현대증권빌딩)	02-2171-1800~3, 1805, 1861, 1863	노원구 · 성북구 · 도봉구 · 강북구 · 중랑구
서울관악 고용센터	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층	02-3282-9249, 9349, 9353, 9366, 9373, 9379, 9385~6, 9388~9, 9394	관악구 · 구로구 · 금천구 · 동작구
인천고용센터	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504호 기업지원과	032-460-4673, 4674, 4678, 4679, 4684, 4691~4693	중구 · 동구 · 미추홀구 · 연수구 · 남동구, 용진군
인천북부 고용센터	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	032-540-5731~3, 5745~6, 5749	부평구 · 계양구
인천서부 고용센터	인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플러스빌딩 5층	032-540-2050~4, 2029	서구, 강화군
부천고용센터	경기 부천시 길주로 360 KD빌딩 3층 기업지원팀	032-320-8973~5, 8972, 8927, 8952, 032-310-8854, 8843	부천시
김포고용센터	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, 9층 기업지원 팀	031-999-0939, 0940~2, 0944	김포시
고양고용센터	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-19, 4층 기업지원팀 (별관)	031-920-3957, 3964, 3976, 3981, 3988, 3997~8	고양시 · 파주시
의정부 고용센터	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,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	031-828-0838, 0893, 0831~4, 0973~5	(경기도) 의정부시 · 포천시· 구리시·남양주시·동두천시· 양주시 · 연천군 (강원도) 철원군
수원고용센터	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, 2층 (삼성생명, 별관)	031-231-7864	수원시 · 용인시 · 화성시

고용센터	주소	연락처	관할지역
성남고용센터	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 웰파크 4층	031-739-3171~3, 3160, 3178, 4916, 4930, 4901, 4991	성남시·광주시·이천시 ·여주시·하남시, 양평군
안양고용센터	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	031-463-3801, 3805, 3827, 0768	안양시·과천시 광명시·의왕시·군포시
안산고용센터	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	031-412-6940~9, 6647	안산시·시흥시
평택고용센터	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기업지원팀	031-646-1205	평택시·오산시·안성시
춘천고용센터	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(석사동)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	033-250-1928	(강원도) 춘천시·화천군· 홍천군·양구군·인제군, (경기도) 가평군
강릉고용센터	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(교동) 3층	033-610-1990, 1992	강릉시·동해시
속초고용센터	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, 3층(조양동)	033-630-1909, 1907	속초시, 고성군·양양군
원주고용센터	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	033-769-0942	원주시, 횡성군
태백고용센터	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	033-550-8645	태백시
삼척고용센터	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	033-570-1906	삼척시
영월고용센터	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, 2층	033-371-6261	영월군,정선군,평창군
부산고용센터	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(양정동) 4층 기업지원과	051-860-1923~4, 1926~7, 1941, 1971, 1979, 2047, 2072, 2083, 2100, 2102	중구·동구·서구· 영도구·남구·부산진구 ·연제구·사하구
부산동부 고용센터	부산 수영구 수영로 685 부산동부고용복지+센터 별관7층 기업지원팀	051-760-7210, 7216, 7220, 7245~7, 7249, 7250, 7286	동래구·금정구· 수영구·해운대구, 기장군
부산북부 고용센터	부산 북구 화명대로 9(화명동), 3층 기업지원팀	051-330-9970~1, 9952, 9954, 9955, 9986, 9945	북구·사상구·강서구
창원고용센터	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, 8층 기업 지원팀	055-239-0960	창원시, 함안군·의령군·창녕군
울산고용센터	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	052-228-1923~6, 1942	울산광역시
김해고용센터	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, 4층 기업지원팀	055-330-6434~6, 6444	김해시·밀양시
양산고용센터	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, 5층 기업지원팀	055-379-2430, 2431, 2422, 2472	양산시
진주고용센터	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(장대동) 안성빌딩 7층 기업지원팀	055-760-6751	진주시·사천시, 산청군·하동군·남해군·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
통영고용센터	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, 3층 기업지원팀	055-650-1811	통영시·거제시, 고성군
대구고용센터	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, 7층 기업지원과	053-667-6006	(대구) 중구·수성구 ·동구·북구, (경북) 경산시·영천시, 군위군·청도군

고용센터	주소	연락처	관할지역
대구서부 고용센터	대구 서구 서대구로 3, dbs빌딩 7층 기업지원팀	053-605-6460~2, 6464~6, 6450, 6488, 6575, 6567, 6477, 6479	남구·서구·달서구
대구달성 고용센터	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 (달성1차 산업단지 내 하나은행 2층)	053-605-9518, 9519	(대구) 달성군, (경북) 고령군
칠곡고용센터	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, 명성빌딩 4층	054-970-1906, 1907	성주군·칠곡군
포항고용센터	경북 포항시 북구 증흥로 221, 2층 기업지원팀	054-280-3055	포항시, 영덕군·울릉군·울진군
경주고용센터	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(동천동), 7층 고용지원팀	054-778-2532	경주시
구미고용센터	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, 기업지원팀	054-440-3360	구미시·김천시·칠곡군
영주고용센터	경북 영주시 변영로 88, 2층 기업지원팀	054-639-1146	영주시, 봉화군
문경고용센터	경북 문경시 매봉 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기업지원팀	054-559-8231	문경시·상주시
안동고용센터	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	054-851-8061	안동시, 예천군· 의성군·청송군·영양군
광주고용센터	광주 북구 금남로 121(북동) 7층 기업지원과	062-609-8652	(광주) 동구·서구· 남구·북구, (전남) 나주시, 화순군· 곡성군·구례군·담양군· 장성군
광주광산 고용센터	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3층 기업지원팀	062-960-3201, 3202, 3203	(광주) 광산구, (전남) 영광군·함평군
전주고용센터	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 기업지원팀	063-270-9210	(전북) 전주시, 무주군· 장수군·진안군·완주군 ·임실군
남원고용센터	전북 남원시 향단로 39	063-630-3915	남원시, 순창군
정읍고용센터	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기업지원팀	063-530-7501	정읍시
익산고용센터	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	063-840-6523	익산시
김제고용센터	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	063-540-8404	김제시
군산고용센터	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기업지원팀	063-450-0634	군산시
부안고용센터	전북 부안군 부안읍 변영로 142, 2층	063-580-0515	부안군·고창군
순천고용센터	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, 4층 기업지원팀	061-720-9160, 9155, 9161, 9163~4, 9169	순천시, 보성군·고흥군
여수고용센터	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, 2층 기업지원팀	061-650-0155	여수시
광양고용센터	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, 커뮤니티센터 8층 기업지원팀	061-798-1917	광양시

고용센터	주소	연락처	관할지역
목포고용센터	전남 목포시 평화로 5, 4층 기업지원팀	061-280-0541~2, 0552, 0564, 0585	목포시, 무안군 · 신안군 · 영암군 · 진도군
해남고용센터	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기업지원팀	061-530-2912, 2905	강진군 · 해남군 · 완도군 · 장흥군
대전고용센터	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48, 2층 기업지원팀	042-480-6000	대전광역시, (충남) 금산군
공주고용센터	충남 공주시 변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기업지원팀	041-851-8507	공주시
논산고용센터	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-8	041-731-8661	논산시 · 계룡시
세종고용센터	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, 2층	044-861-8992~3	세종특별자치시
청주고용센터	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, BYC빌딩 7층	043-229-0704~9	청주시, 진천군 · 괴산군 · 보은군 · 증평군 · 옥천군 · 영동군
천안고용센터	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, 충남타워 3층	041-620-7400	천안시 · 당진시 · 아산시, 예산군
충주고용센터	충북 충주시 봉방동 15-2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	043-850-4030, 4032	충주시, 음성군
제천고용센터	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(화산동)	043-640-9322	제천시, 단양군
보령고용센터	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, 3층 기업지원팀	041-930-6255	보령시, 서천군 · 부여군 · 홍성군 · 청양군
서산고용센터	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, 5층 기업지원팀	041-661-5614, 5664	서산시, 태안군
제주고용센터	제주시 중앙로 165. 2층	064-710-4462	제주시 · 서귀포시